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회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상향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 중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안 별표 2)

- 1)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6.6㎡)을 유사 폭력피해 보호시설 기준을 고려하여 확대(9.9㎡)하고자 함

나.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3)

-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5. 12. 4. ~ 2026. 1.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1인당 연면적 6.6㎡”를 “1명당 연면적 9.9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2.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을 “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로 하며, 같은 호 2.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을 “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17.> 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제6조 관련)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가.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호 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5. 생략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17.> 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제6조 관련)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가.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u>1명당 연면적 9.9제곱미터</u>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호 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u>않는</u> 범위에서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u>않는다</u>. 3~5. 생략

현행	개정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4. 30.> <u>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u> <u>종사자의 자격기준</u> (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4. 30.> <u>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u> <u>종사자의 자격기준</u> (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자격기준</th></tr> <tr> <td>상담소·보호시설의 장</td><td>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td></tr> </table>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4. 30.> <u>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u> <u>종사자의 자격기준</u> (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u>이수해야</u> 한다. 2. 개별기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4. 30.> <u>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u> <u>종사자의 자격기준</u> (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u>이수해야</u> 한다. 2. 개별기준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자격기준</th></tr> <tr> <td>상담소·보호시설의 장</td><td>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td></tr> </table>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u>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u>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센터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긴급전화센터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u>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u>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상담소 · 보호 시설에 근무하	1~5. 생략	상담소	1~5. 생략	

는 상 담원		· 보호 시설에 근무하 는 상담 원	
긴급전 화센터 에 근 무하는 상담원	1~3. 생략	긴급전 화센터 에 근무 하는 상 담원	1~3. 생략